

제234회 영등포구의회
2021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
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이규선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1. 12. 13.

運 營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
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제안경위

의안 제431호로 2021년 12월 8일 이규선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에게 대한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을 처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(구의원 포함)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적용 범위 및 운영원칙, 사업 시행 내용(안 제3조~제7조)

다.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운영, 기능

(안 제8조~제11조)

라. 영등포구청장과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마.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: 생략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게 대한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 - 개정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제1항에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”고 규정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제정으로 사료됨.
- 법률 제18472호 「지방공무원법」(2021.10.8. 개정, 2022.1.13. 시행)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집행기관 또는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, 시행을 앞두고 있음.

○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,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음.
-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, 이는 영등포구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하는 것임. 다만 질병·육아·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과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을 후생복지제도를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게 하였음.
- 안 제5조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, 안 제6조는 편의시설, 체력단련실,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·휴양소 등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, 안 제7조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운영,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- 안 제12조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사업 및 전산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.

○ 검토결과,

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사항을 우리 의회 조례에 적기에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공무원법 (2022.1.13. 시행)

제77조(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19조의 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(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)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,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, 방법,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